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5. 6.  
시민보사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4월 1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8년 4월 18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1998년 4월 27일 제5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 가. 제안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97. 3. 7), 동법시행령('97. 8. 11), 동법시행규칙('97. 9. 18)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규와 부합되도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규 인용조항을 개정된 법규 조항에 맞도록 변경함. (안 제3조·4조, 제8조·9조, 제11조·12조, 제17조·18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관련 용어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변경 및 삭제하고, 합병정화조를 신설함. (안 제4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 정화조청소 범위를 부패조의 스킵 및 침전오니에서 부패조 등의 모든 스킵, 오니, 찌꺼기로 변경함. (안 제4조)
- 정화조의 청소요금을 정화조의 용량에 따른 부과 방식에서 정화조의 실제 청소용량에 따라 부과토록 변경함. (안 제12조)
-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함.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 7. - 다. - <3>)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물처리에관한법률('97. 3. 7)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97. 8. 11)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법시행규칙('97. 9. 18. 환경부령제30호)이 개정되어 우리구 조례도 법규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은 전문 개정안으로,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을 크게 6개 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조례의 조항을 개정된 현행법 조항에 맞도록 인용하는 내용과 기존 조례에 없던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제1장은 목적과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제2장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하여, 제3장은 분뇨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제4장은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제5장은 보칙으로서 청소허가업자의 의무 조항이며, 제6장은 벌칙으로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음.

##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2
----------	-----

제출년월일 : 1998. 4. 1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97. 3. 7), 동법시행령('97. 8. 11), 동법시행규칙('97. 9. 18)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규와 부합되도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함.

## 2. 주요골자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규 인용조항을 개정된 법규 조항에 맞도록 변경함. (안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관련용어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변경 및 삭제하고, 합병정화조를 신설함. (안 제4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 정화조청소 범위를 부패조의 스크럼 및 침전오니에서 부패조 등의 모든 스크럼, 오니, 찌꺼기로 변경함. (안 제4조)
- 정화조의 청소요금을 정화조의 용량에 따른 부과 방식에서 정화조의 실제 청소용량에 따라 부과토록 변경함. (안 제12조)
-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함.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 7. - 다. - <3>)

##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동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합 의 : 이견 없음
- 따로붙임 :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적정처리) 구청장의 관할구역 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 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분뇨처리기본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당해 관할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제2장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제4조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규칙 제 30조제1항, 제3항 및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크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중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 기한이 도래할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크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중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5조 (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예정용량, 예정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기 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제6조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①구청장은 서울시 경찰청도로교통고시 제1호 해당지역(이하 “경찰청고시지역”이라 한다)의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 차량운행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찰청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도심 교통체증이 극심하거나 도시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경찰청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야간청소 시간은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며, 동절기에는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제7조 (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수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제8조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3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 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②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위해제거에 따른 재정적 지원범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할 수 있다.

⑤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 제3장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제12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야간 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경찰청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시민의 야간 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대하여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수료의 가산금)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의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등에우뒀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장 분노관련영업의 허가

제17조 (분노관련영업의 허가등) ①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분노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 제5장 보 칙

제18조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할 경우 청소직후 그 정화시설이 시행규칙 제15조, 제18조, 제21조 및 제5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장 벌 칙

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중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채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 취소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 ⑦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채납 확인후 별지 제8호 서식의 독촉장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 ⑧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1]

####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분뇨수집·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기술능력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가. 수질환경기사, 위생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인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서 당해 업종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1인 이상 나. 정화조의 청소업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자본금	- 법인 : 5천만원 이상 - 개인 : 재산평가액 1억원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개인 : 재산평가액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15㎡ 이상	전용면적 : 15㎡ 이상
차량	흡인식차량의 합계 : 3,600ℓ 이상 (탈취시설 부착)	- 흡인식차량의 합계 : 3,600ℓ 이상 (탈취시설 부착) - 오니처리용 화물차 1대 이상
차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보유차고 면적 (대당) - 5톤 미만 : 13㎡ - 5톤 이상 10톤 미만 : 26㎡ - 10톤 이상 : 36㎡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보유차고 면적 (대당) - 5톤 미만 : 13㎡ - 5톤 이상 10톤 미만 : 26㎡ - 10톤 이상 : 36㎡
신고용전화	2대 이상	2대 이상
기타	- 소독조 1조 이상 - 종사원 목욕시설	- 소독조 1조 이상 - 종사원 목욕시설

[별표 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제12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	비 고	
분 뇨		10ℓ 당	128		
정 화 조	기 본	750ℓ 까지	17,680		
	초 과	100ℓ 당	1,160		
	할 증	야 간	정화조 청소요금	7.0%	
		지하4층 이하	정화조 청소요금	5.0%	

※지하4층 이하의 정화조 시설중 외부로 배출 청소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할증요금 제외

[별표3]

**분뇨 자가수집·운반업의 신고대상기준(제9조관련)**

구 분	기 술 능 력	차 량	차 고	기 타
분 뇨 자 가 수 집 운반업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수거대상 물량을 고려하여 흡인식 차량 1대 이상 -차량확보 용량 1,000ℓ 이상 (흡인식 차량에는 탈취시설 부착)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보유 차고 면적 (대당) -5톤 미만 : 13㎡ -5톤 이상~10톤 미만 : 26㎡ -10톤 이상 : 36㎡	소 독 조 1조 이상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위 반 내 용	부 과 금 액 (만원)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다만,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가. 오수정화시설 BOD, SS(mg/ℓ)				
(1) 1일 처리용량 100m <sup>3</sup> 미만 : 80초과	10	20	50	100
(2) 1일 처리용량 100~200m <sup>3</sup> 미만 : 60초과	20	50	100	100
(3)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 40초과	50	100	100	100
(4) 골프장 : 10초과	50	100	100	100
나. 합병정화조 BOD, SS(mg/ℓ)				
(1) 처리대상인원 50인용 이하 : 20 초과	10	20	50	100
(2) 처리대상인원 51~100인용 이하 : 20 초과	20	50	100	100
(3) 처리대상인원 101인용 이상 : 20 초과	50	100	100	100
다. 단독정화조 BOD 제거율(%)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 50% 미만	10	20	50	100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 50% 미만	20	50	100	100
2.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 BOD, SS 500mg/ℓ 초과	20	50	100	100
3. 법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오수정화시설의 미신고자				
(1)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20	40	60	100
(2)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30	60	100	100
나. 합병정화조의 미신고자	10	20	30	50
다. 단독정화조의 미신고자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10	20	30	50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20	40	60	100

위 반 내 용	부 과 금 액 (만원)			
	1차	2차	3차	4차
4. 법 제12조, 제26조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사용한 자.				
가. 오수정화시설 사용				
(1)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10	20	30	50
(2)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20	40	60	100
나. 합병정화조의 사용	5	10	20	30
다. 단독정화조의 사용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5	10	20	30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10	20	30	50
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사용				
(1)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자	20	40	60	100
(2)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자				
(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경우	50	50	50	50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00	100	100	100
마.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사용	10	20	30	50
5. 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				
가.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1) 1일 처리용량이 200m <sup>3</sup> 미만	20	40	60	100
(2) 1일 처리용량이 200m <sup>3</sup> 이상	30	60	100	100
나. 합병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	10	20	30	50
다. 단독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10	20	30	50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20	40	60	100
라.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50	100	100	100

위 반 내 용	부 과 금 액 (만원)			
	1차	2차	3차	4차
마.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1)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자	50 100	70 100	80 100	100 100
6.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1)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2)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20 30	40 60	60 100	100 100
7. 법 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또는 간이 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가. 기능의 정상적 유지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자.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관막힘, 오수의 역류 또는 누수방지를 위하여 펌프 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 (가)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나)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20 30	40 50	60 100	100 100
(2) 합병정화조	5	10	20	30
(3) 단독정화조 (가)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나)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5 10	10 20	20 30	30 50
(4) 축산폐수처리시설 (가)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 (나)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자				
(5) 간이축산폐수정화조	10	20	30	50
나. 방류수 수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1)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6월마다 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회 측정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10 20	20 40	30 60	50 100

위 반 내 용	부 과 금 액 (만원)			
	1차	2차	3차	4차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정화조 (6월마다 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회 측정	5	10	20	30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10	20	30	50
(3)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 (6월마다 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회 측정	10	20	30	50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20	40	60	100
(4)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자 (분기 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3회 측정	20	20	60	100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30	50	100	100
다.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 (년 1회 이상)				
(가)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50	100	100	100
(나)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100	100	100	100
(2) 합병정화조(년 1회 이상)	30	50	70	100
(3) 단독정화조(년 1회 이상)				
(가) 처리대상인원 100인 미만	10	20	50	100
(나) 처리대상인원 500인 미만	30	50	70	100
(다)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	50	100	100	100
(4) 축산폐수처리시설(년 1회 이상)				
(가)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	50	100	100	100
(나)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자	100	100	100	100
(5) 간이축산폐수정화조(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 유지되도록 수시 내부청소)	20	40	60	100
라. 1일 처리용량 100m <sup>3</sup>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 정화조의 배출방류 수를 소독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 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 는 지역은 제외	10	20	30	50

위 반 내 용	부 과 금 액 (만 원)			
	1차	2차	3차	4차
마. 악취발생 또는 해충번식을 방지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 (가)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나)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20 30	40 50	60 70	100 100
(2) 합병정화조	10	20	30	50
(3) 단독정화조 (가)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나)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10 20	20 40	30 60	50 100
(4) 축산폐수처리시설 (가)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 (나)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자	20 30	40 50	60 100	100 100
(5) 간이 축산폐수정화조	10	20	30	50
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 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100	100
8.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축산폐수처리조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50	70	100	100
9.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간이오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100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	30	40	100
11.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1)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자	30 50	50 70	70 100	100 100
12.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20 50	50 100	70 100	100 100
13.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 분뇨수집·운반업자 (2) 정화조 청소업자,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자	30 50	60 100	100 100	100 100

위 반 내 용	부 과 금 액 (만원)			
	1차	2차	3차	4차
14. 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금을 징수한 자	20	50	100	100
15.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16.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	100	100	100
17.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30	50	100	100
18.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30	50	100	100
19. 법 제43조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1) 기술관리인 (2) 분뇨처리담당자	20 50	40 70	60 100	100 100
20. 법 제44조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10	30	50	100
21. 법 제45조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2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0	50	100	100
23. 법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

(주)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부과 기준은 위반사례 이전 최근 1년간을 기준을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규  
분뇨 자가수집·운반업 (변경) 신고서  
폐업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의 소재지				
영업의 종류		분뇨 자가수집·운반업		
사무실 면적			전화번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자가수집·운반업을 신고합니다.

199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장비 명세서 1부
3.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분뇨 자가수집·운반업 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변경신고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 및 기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2호 서식]

## 분노 자가수집 · 운반업 신고필증

신 고 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주 소	
영업의 소재지		
영업의 종류		
사무실 면적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노 자가  
수집·운반업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199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199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제 제 조의 규정  
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199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199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 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 행위	일시	. . .		내용	
위반 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	
위반행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19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168mm×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sup>2</sup>)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 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 행위	일시	. . .		내용	
위반 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	
위반행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p>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p> <p>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p>					

168mm×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sup>2</sup>)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태료 납부서]					
발행 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날짜도장			수납은행 : 영 등 포 구 청 장 (인)		

168mm×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sup>2</sup>)

(정)

(개인 통지용)

[과태료 납부영수증]					
발행 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날짜도장	수납은행 :			취급자인	

168mm×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sup>2</sup>)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 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 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날짜도장	수납은행 :			영 등 포 구 청 장 (인)	

168mm×118mm(인쇄용지<특급>34g/m<sup>2</sup>)

[별지 제5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체 납)											
일련 번호	통지서 번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당초	독촉		성명	주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297mm×210mm (신문용지54g/m<sup>2</sup>)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간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p>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b>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b>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p style="text-align: center;">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영 등 포 구 청 장                   인</p>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